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운영위원회 조항 삭제
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7.12.~2023.8.1 / 20일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2023.7.17. 기획실-2006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23.7.17. 기획실-2006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(2023.7.19. 가족복지과-3381)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(운영위원회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1.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<u>② ~ ⑦ (생략)</u></p>	<p><u>제17조(운영위원회) 삭제</u></p>

비용추계서 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 전해순
연락처	(033) 330 - 2094